# 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선   | 기 관 의 장 |
|-----|---------|
| 721 |         |
| 람   |         |
| "   |         |



제584호 2023. 6. 30.(금)

# 입 법 예 고

고성군 공고 제2023-1116호 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...... 2

# 고 시

# 공 고

|   | <br> |  |  |  |  |
|---|------|--|--|--|--|
|   |      |  |  |  |  |
| _ |      |  |  |  |  |
| 호 |      |  |  |  |  |
|   |      |  |  |  |  |
| 람 |      |  |  |  |  |
|   |      |  |  |  |  |
|   |      |  |  |  |  |

발행: 고성군, 편집: 인구청년추진단(670-2642, 행정 2642)

고성군 공고 제2023-1116호

### 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「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6. 30. 고 성 군 수

### 1. 폐지이유

해당 규칙의 상위법령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63조의5에 '정책실 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었으나,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2017. 12. 29. 해당 규정 중 "조례 또는 규칙"을 "조례로"로 일부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실효성이 없는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「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」의 폐지에 관한 사항

#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3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의견제출기간: 2023. 6. 30. ~ 7. 20.(20일간)
- 나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우편, 팩스 등
- 다. 의견제출 내용
  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라. 의견제출 할 곳: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(기획담당)
  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
  - 2) 전화번호: (055)670-2052, 팩스번호: (055)670-2059

| ※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(☎055-670-2052)<br>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|--|
| 붙임 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
|  |
|  |
|  |
|  |
|  |
|  |
|  |
|  |
|  |
|  |
|  |

고성군 규칙 제 호

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

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의 견 제 출 서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|      |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|------|------------|--|
| 자 치        | 자 치 법 규 명 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|      |    |   |      |            |  |
| 의 견        | 성명(명칭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| 전화번호 |            |  |
| 제출자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|      |            |  |
| 기치바        | 급규안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찬성여부 |    | 의 |      |            |  |
| /\/\ \ \ \ | 111 G 112                       | 찬성   | 반대 |   | 7    | <i>'</i> ப |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|      |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|      |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|      |            |  |

「행정절차법」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
고성군수 귀하

고성군 고시 제2023-120호

###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6. 28. 고 성 군 수

### ○ 도로명주소 부여

| 종전주소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<br>효력발생일 | 도로명주소<br>부여사유 | 도로명 부여사유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|       | (별지            | 참조)           |          |

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

| 변경 전  | 변경 후  | 도로명주소         | 변경사유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 | 효력발생일         |      |
|       | ( j   | <b>결</b> 지참조) |      |

### ○ 도로명주소 폐지

| 도로명주소 | 폐지고시일  | 폐지사유 |
|-------|--------|------|
|       | (별지참조) |      |

-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(☎055-670-2696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도로명주소 사용
  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| $\bigcirc$ | 도로명주소 | 버겨   | 드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エエヤイン | H1/2 | $\overline{\Delta}$ |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 도로명주소 부여

| 연<br>번 | 종전주소          | 도로명주소              | 도로명주소<br>고시일 | 도로명주소<br>부여사유 | 도로명 부여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     | 동해면 장기리 469-3 | 동해면 구절로 712        | 2023.06.28.  | 건물번호부여신청      | 동해면 구절산이<br>위치하는 도로임을<br>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|    |
| 2      | 구만면 광덕리559    | 구만면 광덕4길 49-8      | 2023.06.28.  | 건물번호부여신청      | 행정구역명(구만면<br>광덕리)을 이용하는<br>네번째 도로    |    |
| 3      | 동해면 외산리 599   | 동해면 외산1길<br>128-12 | 2023.06.28.  | 건물번호부여신청      | 행정구역명(동해면<br>외산리)을 이용하는<br>첫번째 도로    |    |
| 4      | 동해면 외산리 599   | 동해면 외산1길<br>128-14 | 2023.06.28.  | 건물번호부여신청      | 행정구역명(동해면<br>외산리)을 이용하는<br>첫번째 도로    |    |

# 도로명주소 폐지

| 연<br>번 | 건물등의 관할구역 | 도로명주소         | 도로명주소 폐지<br>효력일자 | 폐지 사유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1      | 고성읍       | 중앙로25번길 38-10 | 2022.11.17.      |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|    |
| 2      | 고성읍       | 대가로 30        | 2022.11.17.      |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|    |
| 3      | 하일면       | 송천3길 58       | 2022.11.17.      |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|    |
| 4      | 회화면       | 어신2길 198-55   | 2022.11.17.      |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|    |

고성군 공고 제2023-1113호

## 고성군 금고지정 공고

「지방회계법」제38조(금고의 설치) 및「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」제11조 (지정의 공표와 약정)에 따라 고성군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3. 6. 26. 고 성 군 수

1. 약정기간 : 2024. 1. 1. ~ 2027. 12. 31.(4년)

### 2. 지정내용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     | 취급회계 및          | ! 기금              | 비고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회계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| 장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보생특별회계 |    |  |
| 주금고                 | 巨出   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|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     |    |  |
| (제1금고)              | 특별   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시업특별회계 | 사회복지특별회계          |    |  |
| -NH농협은행             | 회계   | 주차장특별회계         | 고성군청사건립특별회계       |    |  |
| 고성군지부               |      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|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       |    |  |
| 표 8 표 기구            |      | 식품진흥기금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기금   | 고향사랑기금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주)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특별   |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부금고                 | 회계   |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(제2 <del>금</del> 고) |      | 재난관리기금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-BNK경남은행            | 717  | 옥외광고발전기금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고성지점                | 기금   |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통합재정안정화기금(부)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  |

고성군 공고 제2023-1134호

### 급경사지(대가척정N3지구)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를 위한 행정예고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6. 30. 고 성 군 수

#### 1. 목적

태풍,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실 및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
### 2.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

가. 행정예고 기간: 2022. 6. 30. ~ 7. 19.(20일간)

나. 공고방법: 고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, 공보 등

### 다. 관련근거

-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
-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

### 3. 의견제출

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3. 6. 30. ~ 7. 19.

나. 제출방법: 우편 또는 방문, 전자우편(mk20411@korea.kr)

다. 제 출처: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(경남 고성군 안전관리과)

라. 문 의 처: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(≥055-670-2514)

※ 제출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"의견 없음"으로 간주

### 4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

| 지역명                | 위치                   | 재해위험도평가<br>(점수) | 면적(m²) | 지정사유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급경사지(대가<br>척정N3지구) | 고성군 대가면<br>척정리 578번지 | C(62)           | 4,464  | 재해위험도 평가에 따른 |    |
| 붕괴위험지역             | 일원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| 지구 지정        |    |

### 5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

| 지역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시기               | 예상사업비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급경사지(대가<br>척정N3지구)<br>붕괴위험지역 | 2024. 1. ~ 2025.12 | 1,400백만원 | 급경사지 정비 1식<br>(계단식 옹벽설치 및 산마루측구 정비) |

- ※ 사업시기, 사업예산, 사업내용은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6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
  - 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  - 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, 증축 · 개축하는 행위
  - 다. 옹벽・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  - 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  - 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- 7.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

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고성군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야 함.

- 붙임 1.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.
  - 2. 의견제출서 양식 1부. 끝.

급경사지(대가척정N3지구)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 관련 위치도 및 전경사진





| 급경사지             | 붕괴위  | 험지역  | 지정   | ]・고/ | 시를  | 위한  | 행정호  | 고    | 의견서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주 소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성 명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연락처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상기와 같이<br>제출합니다. | 급경사지 | 붕괴위험 | 지역   | 지정・コ | 고시를 | 이한  | 행정예고 | .에 관 | 하여 의전 | 건을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2023 | 3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j    | 제출역 | 인 : |      |      | (서명   | ,인) |
| 고성군수 구           | 기하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|